##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1 발의연월일: 2020. 2. 25.

발 의 자:양정숙・이규민・한병도

안호영 · 정찬민 · 윤준병

서영교 · 최종윤 · 위성곤

신영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래 된 주 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 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 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 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 2 신설 등).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의"를 "주민등록증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주민등록증의"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주민등록증의"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주민등록 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모바일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발행번호, 주민등록기관, 유효기간 및 모바일개인식별부호를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신청·발급·갱신, 제2항에 따른 수록사항 중 유효기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3(모바일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 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제3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제24조의2제3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 증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비의 부담) ① (생 략)	제5조(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u>주민등</u>	②		
<u>록증의</u>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	록증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	모바일주민등록증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분담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	③		
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			
과 <u>주민등록증의</u> 재발급 등에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주민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록증의		
정한다.			
<u>&lt;신 설&gt;</u>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		
	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		
	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모바일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指紋), 발행일, 발행번호, 주민 등록기관, 유효기간 및 모바일 개인식별부호를 수록한다. 다 만,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은 주민의 신청이 있 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 록증의 신청·발급·갱신, 제2항 에 따른 수록사항 중 유효기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모바일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모바일주민등록증

<신 설>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 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 3. (생 략)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또는 제24조의2제3항에	<u> 따른</u>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회	탁인)
주민등록증(제24조의2저	<u>]1항</u>
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을	王
<u> 함한다. 이하 같다)</u>	
<u>.</u>	
<u>.</u>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 2. · 3. (생략)
- ② ③ (생 략)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신 설>

5. ~ 10. (생략)

			•
1.	(현행과	같음)	

- 1의2.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 만료
- 2.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모 바일주민등록증 또는 제24조 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
- 5. ~ 10. (현행과 같음)